

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심사 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
합작 법무법인 관련 사항 *필요시 별지 사용	명 칭	(한 글)	
		(한 자) ※ 한자 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	
	(영 문)		
	사무실	(1) 주사무소 주소: 전화: FAX:	
(2) 분사무소(있는 경우) 주소: 전화: FAX:			
국내 합작참여자		명 칭	(한 글)
			(한 자) ※ 한자 명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
	(영 문)		
	변호사협회 등록번호		
대표자	※ 공동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.		
주사무소	주소:	전화: FAX:	
		홈페이지 주소:	
		설립시기:	
합작참여자 관련 사항 *필요시 별지 사용	명 칭	(원 어)	
		(한 글)	
		(영 문)	
	본국 변호사협회 등록번호(있는 경우)		
	대표자	※ 공동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.	
최고 의사결정 사무소	소재지:	전화: FAX:	
		홈페이지 주소:	
		설립시기:	

합작 법무법인 대표자 관련사항 *필요시 별지 사용	대표자가 변호사인 경우	성 명	(한 글)	
			(영 문)	
		주 소		
		변호사 자격취득년월일		
		변호사협회 등록번호		
	대표자가 외국법자문사인 경우 ※ 공동 대표자인 경우 모두 기재	성 명	(원 어)	
			(한 글)	
			(영 문)	
		주 소		
		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		
본국 변호사협회 등록번호 (있는 경우)				
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관련		자격승인 연월일		
	자격승인번호			
	변호사협회 등록번호			

(국내 합작 참여자 명칭)과 (외국 합작참여자 명칭)은 각각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,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35조의 8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35조의 3에 따라 위와 같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국내합작참여자 (서명 또는 인)

외국합작참여자 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첨부 서류	1. 정관 2.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.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·법인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국내합작참여자 (서명 또는 인)

외국합작참여자 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